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권 순 현*, 김 영 숙**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법적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성평등 관련법제인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입법평가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제도들의 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9년 최초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2012년 까지 성인지예산서는 총 세 번에 걸쳐 작성되었다. 성인지결산서도 함께 작성되었는데,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가 2011년 5월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국가정책에서 성차별적 요소와 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가 대상 및 절차, 결과의 활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근거법령(국가재정법/성별영향분석 평가법)과 적용대상(국가예산/계획·사업·법령)이 각각 다르지만, 각 제도의 적용대상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

이 두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아직 성불평등을 줄이는 데

*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성별수혜비율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고 이것이 성별영향분석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경우도 아직은 전반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2005년 이후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대상 과제부분이었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교육, 안정 등의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추측할 수 있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과제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컨설팅단의 운영근거규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결과를 성인지예산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두 제도 모두 시행초기인 만큼 각각의 산출물의 질을 충분히 제고한 이후에 보다 직접적인 연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즉, 작성시기 및 작성주체에 대한 사항들도 두 법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입법평가, 성평등 관련법제

-
- I . 서 론
 - II. 성평등관련 법제의 개념과 현황
 - 1. 성인지예산제도
 - 2. 성별영향평가제도
 - III.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
 - 1. 성인지예산제도
 - 2. 성별영향평가제도
 - 3.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방법론
 - IV.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과제
-

I. 서 론

우리나라는 남녀평등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적 제도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그리고 성인지 통계작성의 세가지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이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평가함으로서 성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 제도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함으로써 모든 정책의 성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 실시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다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예산의 편성·심의·시행·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화된 속성을 분석하여 성별간 자원배분의 불평등한 효과를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모든 과정에서 예산의 배분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인지 통계는 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로서,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었고¹⁾ 2007년에 통계청이 통계법을 개정하면

1) 1995년에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한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이 언급되었고 2002년에는 제13조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킬 것’을 추가하였다.

서 통계법 제18조에 성별통계 관련조항을 포함시켜 성인지 통계 확대의 법적기반이 강화되었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글로벌 스텐더드에 기초한 발전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양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성평등이 국내·외적 주요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2009년부터 시행된 성인지예산제도와 2005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보자 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입법평가는 아니지만 동 제도들이 그동안 시행된 효과들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입법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먼저 이 제도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입법평가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제도의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입법평가의 종류는 평가시기를 중심으로 사전적 평가, 병행적 평가, 사후적 평가로 구분된다. 사전적 평가는 법률안의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병행적 평가는 법률안의 초안의 마련에서부터 법률안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평가이며, 사후적 평가는 법령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법령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정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²⁾.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평등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새롭게 시행되는 관련법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었던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었으며³⁾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는 2011년 8월 지방재정법

2)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3) 이하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개정으로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입법평가를 기준의 입법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입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안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면⁴⁾, 기존 제도 도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성평등 관련법제를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성평등관련 법제의 개념과 현황

1. 성인지예산제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9년 최초로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후 2011년 10월에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성인지예산서는 총 세 번에 걸쳐 작성되었다. 성인지결산서도 함께 작성되었는데,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가 2011년 5월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었다⁵⁾.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은 <표 1>과 같다.

한편,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사업 선정의 첫

것으로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11년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4)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28면.

5) 국가 성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로 구성되지만, 성인지결산서는 2011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관계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서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표 1〉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9. 성인지 예산서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번재 기준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두 번째 기준은 전년도(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세 번째 기준은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제별로 다시 일자리 사업, 안전 사업, 그 밖의 기타 사업으로 분류된다. 일자리 사업은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부터는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2011년 성별영향평가의 중점의제 영역인 일자리와 안전이 대상사업에 포함되었다.

〈표 2〉 2010년도와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명	기관명
1. 성평등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2. 성인지 예산 사업 총괄표	1. 성평등목표 2. 성인지 예산 사업 총괄표
3. 사업설명자료 000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10년 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목표분야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성별 수혜분석 o 사업대상자 o 사업수혜자 o 예산 현황	3. 사업설명자료 000사업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11년 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목표분야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성별 수혜분석 o 사업대상자 o 사업수혜자 o 예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11년 성과목표

주 : 2012년도에 작성되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양식 또한 소폭 수정되었는데, 현재 작성중인 예산서인 관계로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자료 : 김영옥 외,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0, 425면

2011년 성별영성인지예산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바탕으로 할 때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된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 수와 예산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규모 추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제출기관(개)		29	34	34
일반회계	사업 수(개)	156	159	168
	예산액(억원)	70,232	81,309	85,982
특별회계	사업 수(개)	39	43	40
	예산액(억원)	2,912	2,923	2,481
기금	사업 수(개)	-	43	46
	예산액(억원)	-	17,516	18,579
계	사업 수(개)	195	245	254
	예산액(억원)	73,144	101,748	107,042
	정부 총지출 대비(%)	2.5	3.3	3.3

주 : 기금 사업은 2011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한 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 15면.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에 대한 개념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국외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정의는 다양하다. 실제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기까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용어의 개념 및 정의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였으며, 지금도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이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며,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하게 국가의 재원을 배분(allocation)하는 행위이자 과정임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표 4〉 참조).

〈표 4〉 성인지예산에 대한 주요 개념들

구분	주요내용	비고
Budlender et al., (1998)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임. 즉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것. 여성을 특별한 이해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것임, 성 인지 예산의 목적은 정책과 국가재원을 배분(allocation)하는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함	
Nordic Council of Minister-Belgium Government (2001)	성인지예산은 정부 정책이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남성과 소년에 대한 효과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임. 여성과 남성의 욕구와 우선성이 동등하게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과정을 검토하는 것. 예산의 편성, 집행, 감사, 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젠더분석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서에 젠더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및 정부의 책무를 보여줄 수 있음. 전년도 예산의 효과와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대해 성평등 목적으로 부합하는 기대효과가 포함되어야 함	국외의 주요 개념
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2003)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gender-based assessment)를 의미함. 즉 모든 수준의 예산과정에서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구조화하는 것	
김영옥 외(2007)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이자 과정으로 정의하는 것	
기획재정부(2009),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국내의 주요 개념
「국가재정법」 제26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자료 : 조선주 외,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37면

2. 성별 영향평가제도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국가정책에서 성차별적 요소와 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표 5〉 여성발전기본법 상의 성별영향평가 관련조항

여성발전 기본법	<p>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리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 2(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 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 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 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책 분석· 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 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 평가계획 및 분석· 평가결과를 여성가족</p>
-------------	---

	<p>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	<p>제1장 총칙 i) 입법목적, ii) 용어의 정의 iii) 국가 등의 책무,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i) 분석평가의 대상, ii) 분석평가시 고려사항, iii)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iv)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v)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vi) 정책개선권고, vii)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i)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ii) 전담공무원의 지정, iii) 분석평가 교육, iv) 분석평가 자문제공, v) 분석평가기관 지정, vi) 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p>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성별영향평가제도에는 2006년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였고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의 지정·운영,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수와 참여기관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5년 53개 기관이 참여하여 85개의 과제가 평가되었던 것에 비하면 2011년에는 293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2,954개의 과제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가 되어 양적인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증가한 것이었고 중앙행정기관의 참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표 6〉 성별영향평가제도 작성사업 규모 추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기관 과제수	53 85	187 314	278 720	295 1,531	298 1,908	292 2,401	293 2,954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가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대상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서 경제성장, 복지, 고용 교육부분의 정책 등이다. 또한 관련 통계상 정책수혜도의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 발생우려가 있는 정책 등이 평가대상에 해당된다. 2009년의 대상과제 선정 기준은 성별격차, 성별관련성, 파급효과, 예산규모, 평가결과 환류 등 5개 항목과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0년 지침서에는 이를 간소화하여 성별격차, 파급효과, 예산규모, 평가결과의 환류의 4대 항목과 10대 세부항목⁶⁾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에는 점점 악화되는 여성고용상황과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자리분야와 안전분야가 지정 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수혜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⁷⁾ 등 양성평등관련 국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등이 평가대상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지표를 수립하여 각 평가기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지표를 정책단계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정책입안 및 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 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지표가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틀은 2008년 까지 유지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성별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9년 성별영향평가부터는 평가지표 및 점검포인트에 따라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평가지표를 성별현황분석과 정책개선으로 구분하

6) 세부항목들은 ‘정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가, 정책수혜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정책의 참여자 또는 시설 이용자를 성별로 구별할 수 있는가? 여성권한척도(GEM)등 성평등 관련 국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사업인가? 성평등 정책목표 미달 원인의 해결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사업)인가?’ 등의 질문들로 구성된다.

7) 성격차지수(GGI)란 성별 격차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경제활동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정치적 권리, 보건과 생존 등 네 분야에 대한 지표로 구성되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활용되는 성평등지표 중 하나이다.

여 성별통계의 현황, 정책참여자의 성별현황, 예산집행의 성별비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개선,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방안 등의 세부항목 등을 평가하였다.

〈표 7〉 성인지예산서 평가지표

구 분	2005년 평가지표	2006년 평가지표	2007, 2008년 평가지표
공통사항		①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①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1단계〉 정책 입안 및 결정	①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관련성 파악 ②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③ 정책입안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②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②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2단계〉 정책 집행	⑤ 성인지적 예산 편성 ⑥ 성인지적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⑤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⑤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 정책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3단계〉 정책 평가	⑦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평가의 양성평등성 ⑨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⑦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⑦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⑨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방안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제도에서는 법률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가 없이 ‘정책의 분석·평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되는 평가라 하더라도 성평등을 분명한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개선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실시되어 온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가 대상 및 절차, 결과의 활용과 추진체계

에 대한 명확한 법정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정 혹은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근거법령(국가재정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적용대상(국가예산/계획·사업·법령)이 각각 다르지만, 각 제도의 적용대상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

III.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

1. 성인지예산제도

이 연구에서는 시행 이후 3년치의 예산서를 제출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는 제도의 영향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영향을,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 내용을 통해 정리하고, 성인지예산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치 정보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유관 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해관계자들의 평가

성인지예산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작성주체인 사업담당 공무원과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는 국회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 작성주체인 담당 공무원들의 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 조사」 결과⁸⁾를 통해 파

8) 조선주 외,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95~121면 참조.

악할 수 있다. 최근 조사는 2011년 8월에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공무원과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총 180명으로, 이 중 예산서의 기관별 총괄부분을 작성하는 기획재정담당자는 20명이었다.

성인지예산서 양식의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획재정담당자들에게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항목 작성과 사업총괄표 항목 작성의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의 응답자가 "대체로 어려웠음"이라고 답하였다. 사업담당자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어려웠음"이나 "매우 어려웠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35%로 나타나 담당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수혜분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인지예산서 양식의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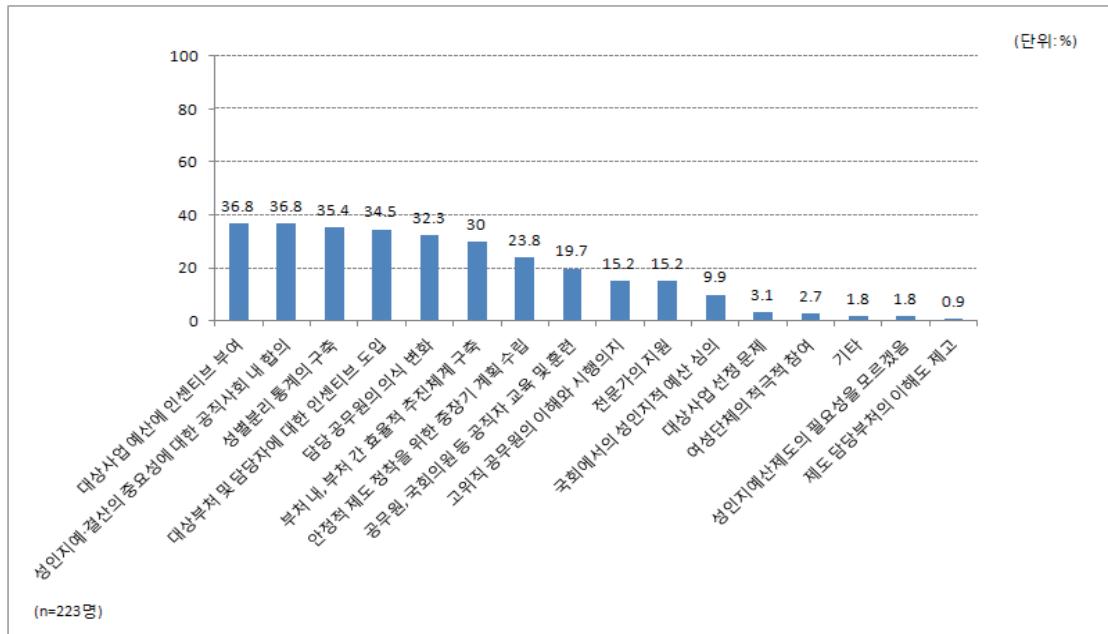
(단위: 명(%))

분야 \ 태도	매우 쉬웠음	대체로 쉬웠음	보통	대체로 어려웠음	매우 어려웠음	합계
기획재정담당자						
성평등 목표	2(10.0)	3(15.0)	5(25.0)	10(50.0)	0(0.0)	20(100.0)
사업총괄표	1(5.0)	4(20.0)	5(25.0)	10(50.0)	0(0.0)	20(100.0)
사업담당자						
성평등 목표분야	6(3.8)	38(23.8)	83(51.9)	29(18.1)	4(2.5)	160(100.0)
성평등 기대효과	4(2.5)	41(25.6)	75(46.9)	33(20.6)	7(4.4)	160(100.0)
성별 수혜분석	5(3.1)	26(16.3)	73(45.6)	37(23.1)	19(11.9)	160(100.0)
성과목표	5(3.1)	29(18.1)	83(51.0)	33(20.6)	10(6.3)	160(100.0)

자료 : 조선주 외,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03~104면의 표를 재구성.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질문하고 그 중요도 순위를 매긴 결과 "대상사업 예산 인센티브 부여"(36.8%), "성인지 예·결산서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사회 내 합의"(36.8%), "성별분리 통계의 구축"(35.4%), "대상부처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34.5%), "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32.3%), "부처 내 및 부처 간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30), "인정제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23.8), "부처내·부처 간 협력을 위한 공직자 교육 및 훈련"(19.7), "국회에서의 성인지적 예산 심의"(15.2), "전문가의 지지를 위한 공무원의 이해와 시행의지"(15.2), "여성단체의 적극적 참여"(9.9), "대상사업 선정 문제"(3.1),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모르겠음"(2.7), "제도 담당부처의 이해도 제고"(1.8), "기타"(1.8),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모르겠음"(0.9)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주 :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임.

자료 : 조선주 외,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18면.

요약하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들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성별수혜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공무원들은 성인지예산제도의 향후과제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인센티브 부여 및 공직사회 내 합의도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옥 외(2010)⁹⁾에서는 국회 관계자에게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견을 기술한 바 있다.

9) 김영옥 외,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17~123면 참조.

첫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될 사업의 규모를 양적으로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성불평등 문제와의 관련성이나 긴급성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쟁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규모의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지예산서의 국회 심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국회에서의 성인지 예산서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원 개인의 성향과 관심에만 의존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심사를 통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성인지예산서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예산심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의 필요성이 또한 강조되었다. 예산심의, 결산심의, 국정감사 등의 시기에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 및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시민단체, 특히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단체들이 예산심사 시기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거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성인지예산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치 정보 활용 사례

-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 일자리사업 예산의 성별수혜율의 변화¹⁰⁾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

10) 2절의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김영숙 외,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1, 85~90면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고 정의한다면, 예산의 성별수혜율은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예산의 여성수혜자 비율 비교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사례를 보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 선정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을 포함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만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는 예산의 여성수혜자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수혜자 비율은 여성수혜자 수를 전체 수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중 성별분리자료가 사용가능한 사업 중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만이 분석대상이 된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중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인 197개 사업 중 성별분리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사업은 159개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선정기준별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나며, 159개 사업 중 일자리사업이 74개로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표 9〉 참조).

〈표 9〉 성별분리자료가 획득 가능한 사업의 선정기준별 분포

선정기준		사업 수	
일자리사업	2011년도 작성사업	66	74
	2012년도 신규사업	8	
안전		6	
기타	2011년도 작성사업	78	
	2012년도 신규사업	1	
합계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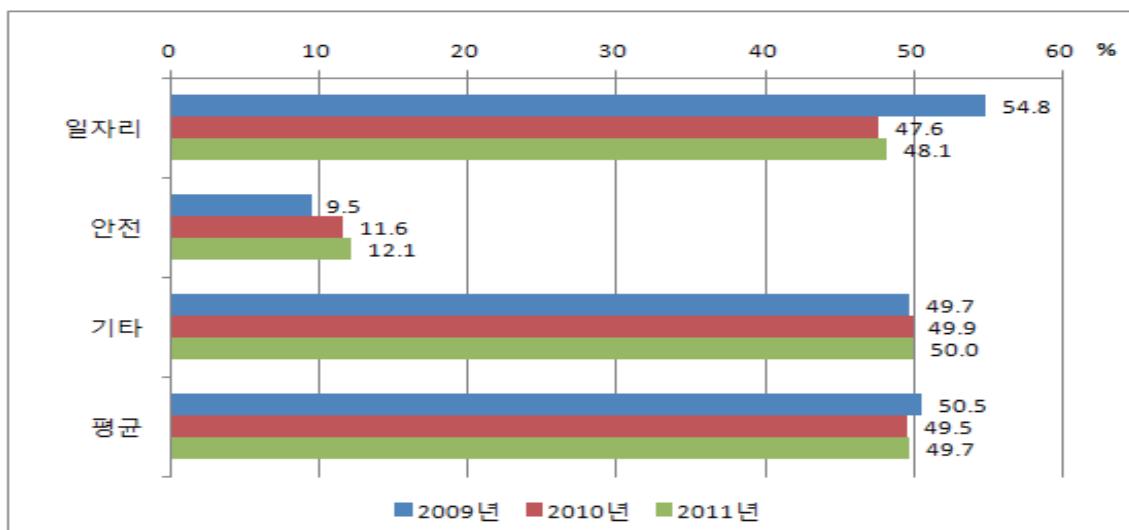
자료 : 김영숙 외, 전개서, 85면의 표를 재구성.

74개 일자리 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2009년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2010년부터는 전체 평균을 1~2%point 하회하고 있다. 여기서 일자리사업이란 기획재정부가 축

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관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말하며,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고용촉진사업, 교육·훈련사업으로 분류된다.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여성수혜자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장기실업자 또는 취업애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74개 사업 중 가장 많은 44개 사업이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분류되었다. 고용촉진사업은 사업주 지원금 및 보조금, 구직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등 근로자의 고용 유지 또는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지원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사업은 개인·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74개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 중 28개가 교육·훈련사업에 해당되었고, 고용촉진사업은 단 한 개에 불과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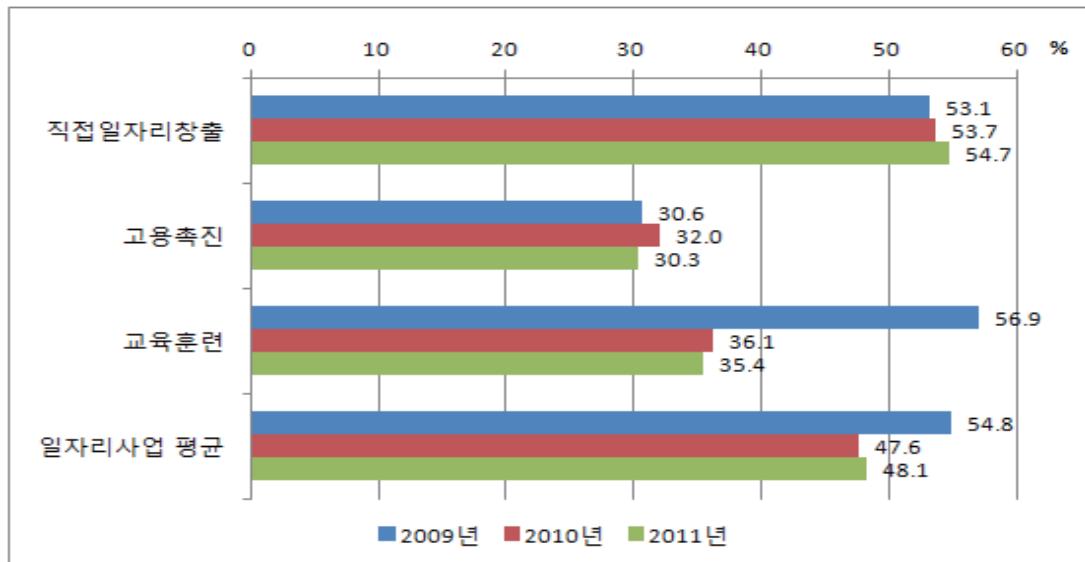
〈그림 2〉 선정기준별 여성수혜자 비율(2009~2011년)



주 : 여성수혜자 비율 = (여성수혜자 수/전체수혜자 수)×100
 자료 : 김영숙 외, 전계서, 86면.

11) 한 개 사업은 분류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그림 3〉 일자리 사업 유형별 여성수혜자 비율(2009~2011년)



주 : 여성수혜자 비율 = (여성수혜자 수/전체수혜자 수)×100

자료 : 김영숙 외, 전계서, 87면.

주로 사회서비스 및 단기적 일자리 성격의 사업이 많은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자 비율이 50% 이상인 반면,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교육·훈련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2009년에는 평균 이상이었으나 20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35.4%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소의 원인은 일부 교육·훈련 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고용노동부),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 교육’(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세 사업의 2011년 여성수혜자 비율은 2009년 대비 10%point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높은 여성수혜비율과 감소추세인 교육·훈련사업의 여성수혜자 비율은,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여성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성별 영향평가제도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을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성별 영향평가제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이다. 따라서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정책효과를 추측해보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별 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양성평등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개별 사업 및 과제별로 그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적인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관련 국제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다.

현재 양성평등 관련된 국제지수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성격차 지수(GGI: Global Gender Gap Index) 등이 있다. 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여성권한척도는 여성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 비율, 남녀 소득비를 기준으로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를 측정하여 평등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남녀평등지수(GDI)는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취학률, 남녀수입 추정치 등에서의 남녀차이를 측정한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경제적 참여, 경제적 기회, 정치적 권한, 교육적 성과, 건강과 복지 등 5개 주요 부문에서의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다.

여성권한척도 및 성격차지수의 경우 국제 비교의 상대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 사회전반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이러한 국제지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권한척도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국제 순위는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였다. 여

성권한척도는 2005년에 0.479에서 2009년에 0.55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원 비율이 2008년 13.7%에서 2009년 14%로 증가하고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이 2008년 8.0%에서 2009년 9.0%로 각각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권한척도의 경우 순위의 등락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조사대상 10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61위로 순위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여성권한척도는 양성평등 구현에 있어서 부분적인 측면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성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권한척도의 경우 정치영역과 의사결정 영역에의 참여에 초점을 두어 측정한 지표이므로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성격차지수(GGI)의 경우 성평등 수준보다는 남녀간의 격차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단이나 투입과 관련된 변수의 격차가 아니라 성과변수의 격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여성권한척도가 정치 및 의사결정 부문의 여성 참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단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 성격차지수는 정치적 참여, 경제적 참여, 교육, 건강, 복지 등 상대적으로 좀 더 종합적인 관점을 나타내므로 더 포괄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2006년 0.62에서 2011년 0.63으로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11년 현재 일본(0.65)과 함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4)~(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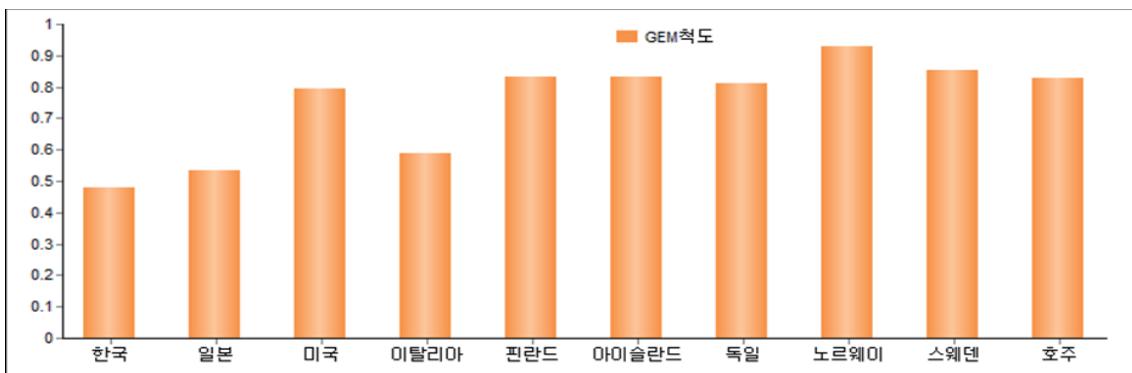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양적으로 확산되었던 200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관련 국제지표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5년 이후 성평등 관련 제도의 양적 확산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성격차의 감소라는 제도의 성과가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성별영향을 최종 수혜자의 성별로 파악하여 성격차를 좁히려는 것으로, 이러한 성평등 관련 제도들의 시행으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개선되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결과로 연결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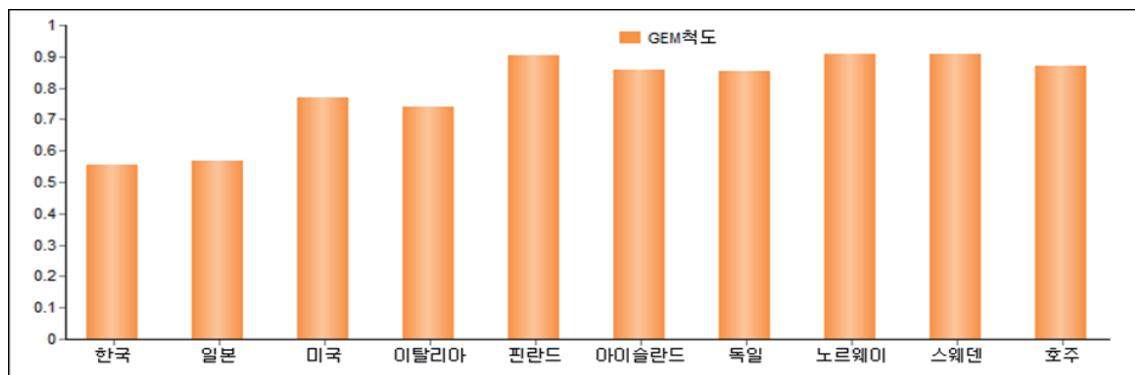
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의 성별영향을 평가하여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한 정책에 반영된 결과 실제적으로 여성에 대한 수혜율이 늘어나는 것이 통계로 파악이 되어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결과가 매년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제도개선에 반영되기 까지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몇 개의 국제지표의 변화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성평등지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 외에도 주관적인 평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정책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 사회 및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취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먼저 제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평가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77.5%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근세 외, 2010).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제도시행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한 정책을 통해 국가의 성 평등 수준을 실제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9.9%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양성평등 제고 기여에 동의하였고 41.9%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태도에서도 아직은 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라서 동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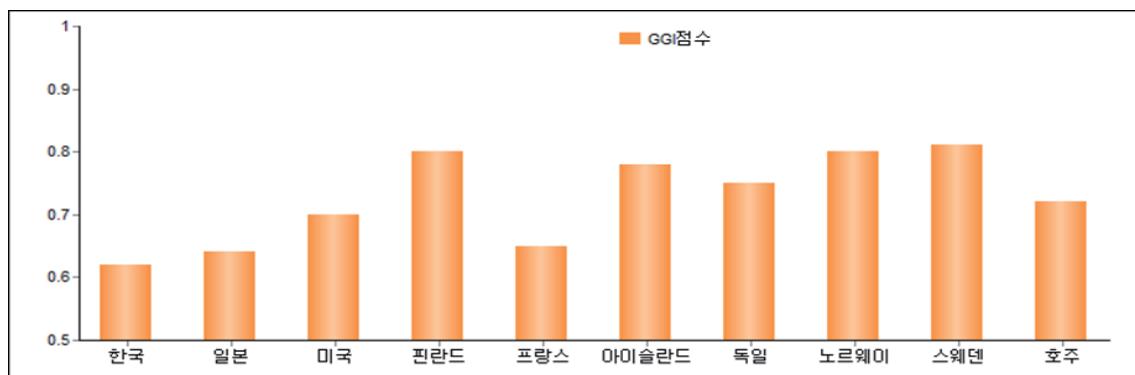
〈그림 4〉 여성권한척도(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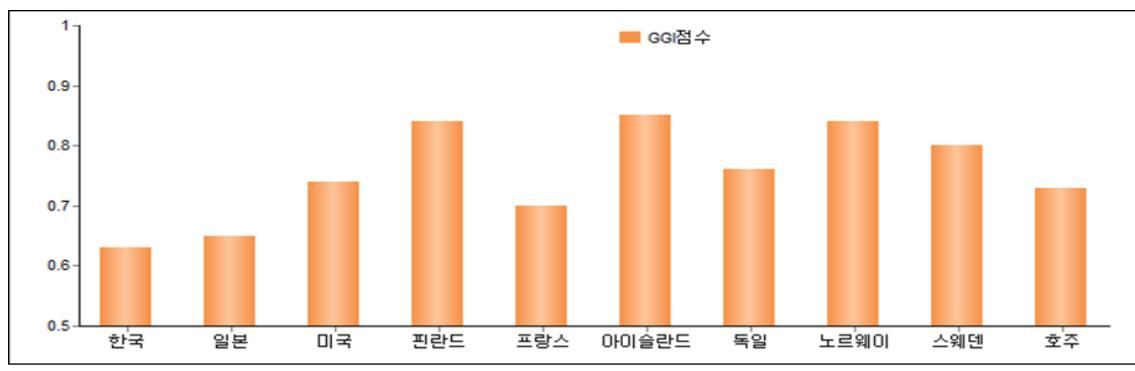
〈그림 5〉 여성권한척도(2009년)



〈그림 6〉 성격차지수(2006년)



〈그림 7〉 성격차지수(2011년)



자료: UNDP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7년간 시행되어온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지표상으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9년 시범적으로 개발한 성평등지표 및 측정방안에 따르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005년 이후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대상 과제부분이었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가족, 경제활동, 교육, 안전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방법론

이 장에서는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성과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이미 이 제도 자체가 입법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새로 도입되고 시행되는 법제도들의 성별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이 제도 자체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상위평가(meta-evaluation)가 된다.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법률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한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법률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역효과와 반작용과 같은 법률의 부수효과를 인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존속이나 폐지 혹은 개정여부와 개정범위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법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비용, 유용성, 친숙성, 수용성, 집행가능성, 계획적합성, 평가가능성 등이 있다. 효과성은 어떤 예측한 결과와 실제의 효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법제도 시행의 실효성

을 평가하는 것이며 수용성 또는 준수가능성은 수범자인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법령의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은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후평가에서의 평가기준은 목표달성도, 비용 또는 비용편익, 수용성, 실용성, 부수적 효과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¹²⁾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규정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비용추이가 긍정적인가, 비용편익관계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현행규정이 계속해서 수용되는가, 현행 규정의 적용을 확대할 때 실용적으로 나타나는가, 부정적인 부수효과가 줄어드는가 하는 것들이 사후적 분석을 위한 구체적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들이 모든 법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비용 혹은 비용편익의 기준이 모든 법제도의 평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경우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비용 혹은 비용편익 측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목표달성도와 수용성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평가의 일반적 기준으로는 효과성과 수용성, 그리고 집행가능성 등이 두 개의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항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후적 평가로서는 목표달성도와 수용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기준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인지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법제도의 시행 자체가 별도의 재정을 소요하는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법이 적용된 개별 사업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비용 혹은 비용편익분석이 평가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겠으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비용 혹은 비용편익의 기준보다는 목표달성도, 수용성, 집행가능성 등이 좀 더 적절한 평가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성과평가에 의하면 아직 법제도의 시행 이후 목표달성 면에서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평등 관련법제의 효과는 단지 법의 시행으로 목적이 달성되

12) 박영도. 앞의 책, 171~172면, 196~197면.

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제도 혹은 관습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들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 이후 최소한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미미하나마 개선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 제도들의 시행범위가 확장되고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제도의 효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성평등관련 법제도에 관한 또 하나의 주요 평가기준은 집행가능성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한 후 실제로 제도를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면 법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법 제도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집행가능성이란 법규범의 효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현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법집행기관과 사회전체의 경제능력을 고려한 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행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행정적 실현가능성, 법령간 모순 여부 등 법적 실현가능성 등이 포함된다.¹³⁾ 앞에서 우리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법제도를 실행하는 주체인 관련공무원들의 동 제도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들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성별수혜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경우도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태도에서도 아직은 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기준중의 하나인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법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행정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아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법평가의 방법론적 측면으로 볼 때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이러한 제도들을 축소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오히려 성평등을 위한 관련법제들의 현재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되

13)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동 제도들의 시행과정에서 입법평가의 방법론에 맞는 자료들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성 혹은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를 위해서는 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법의 대상인 여성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평등 관련법제는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법률들의 입법의 궁극적 목적이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이 법으로 인하여 실제로 혜택을 느끼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부 데이터에 의존한 평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여성이 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살펴본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로서의 의미를 일부분 갖고 있지만 향후 성평등관련 법제들에 대한 좀 더 염밀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성평등 관련제도들의 법적 개선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방법론에 적합한 자료의 생산 및 축적에 관한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과제

이 글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가 2005년 이후 시행된 결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1년 각각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도입으로 제도가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 시행되어 온 제도들의 시행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형태의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는 아직 성 격차를 줄이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성별수혜비율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고 이것이 성별영향분석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산의 성별수혜비율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보다 심층적인 사업단위의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의 예산서가 수혜자의 성별 분포에 관한 정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이 문서에 수혜자의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는 자체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실제로 해외의 전문가들은 성인지예산서가 담고 있는 성별정보의 의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¹⁴⁾.

그러나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주체인 공무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핵심항목인 성별수혜분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의 향후과제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인센티브 부여 및 공직사회 내 합의도출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회관계자의 경우에는 작성사업 규모의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중 쟁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성인지예산서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 및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담당 공무원이 예산서 작성시 필요한 성별분리 통계를 선정, 확보, 해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므로, 예산서 작성시 교육 및 컨설팅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 예산서 작성기간 동안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각 기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 단의 위상이 모호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연도마다 인원수, 보수 등이 달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및 교육의 혼재로 인하여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강사와 컨설턴트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

14) 김영옥 외,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33~155면 참조.

팅단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¹⁵⁾.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성인지예산서의 국회 심사 의무화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유관 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며 국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¹⁶⁾.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동 제도의 입법의 취지에 맞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개의 성평등 관련법제에 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보면 두 제도 모두 아직 시행 초기단계와 이행단계에 있어 아직은 가시적 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어 주요한 법적 과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연계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제도는 평가대상과 평가목적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평가대상 혹은 분석대상의 특성과 적용에는 차이점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서 성평등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까지도 포함한다.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위한 예산사업뿐 아니라 일반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는 모두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두 제도는 공통되는 항목이 존재하고, 성인지예산서에서는 담을 수 없는 심층분석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가능하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양 제도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두 제도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제도

15) 조선주 외, 「2011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1, 63면.

16) 조선주 외,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46면.

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연계에 관한 논의와 노력은 정부와 학계에서도 계속되어 왔다.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2010년 성별영향평가 과제 총 110개 과제 중 82개 과제(75%)를 성인지예산서에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기반을 마련하였다¹⁷⁾.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의 의의 중의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규정을 명문화했다는 데 있다¹⁸⁾. 또한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는데,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예산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는 마경희 외(2009), 박재규 외(2009) 등에 의해서도 제기되어 왔다.

두 제도가 모두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실제 그 평가대상에 차이가 많은데, 우선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가 단위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중 예산사업이면서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과제 단위가 세부사업뿐 아니라 성별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과 정책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시행초기인 만큼 각각의 산출물의 질을 충분히 제고한 이후에 보다 직접적인 연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즉, 작성 시기 및 작성주체에 대한 사항들도 두 법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17) 대한민국정부, 「2012년 성인지예산서」, 2011, 3면.

18) 이 규정은 노력의무 규정으로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다(박선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성평등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13면).

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들을 요약하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를 기초 데이터를 이용해서 살펴본 결과 성평등 관련법제들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동 제도들이 2012년부터 지방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확대 강화됨으로 인해 향후 이 제도들의 성과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평가의 방법론으로 본다면 현재 두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이 제도들의 집행주체인 공무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수용성과 집행가능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시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센티브의 마련과 함께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성인지예산서의 국회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두 제도간 연계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각 제도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두 제도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그 목적과 대상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각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관련 법제들의 연계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세 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용역보고서, 2010.
-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김선욱 외, 「성주류화 기반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08.
- 김현수·조영기,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09.
- 기획재정부, 「2012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2011.
- 김영숙 외,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1.
- 김영옥 외, 「성인지예산분석기법 및 제도적 인프라구축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김영옥 외,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 2010.
- 김영옥 외,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대한민국정부, 「2010년 성인지예산서」, 2009.
- 대한민국정부, 「2011년 성인지예산서」, 2010.
- 대한민국정부, 「2012년 성인지예산서」, 2011.
- 마경희·김경희·김양희·박기남·김효선,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선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빛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성평등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2.
- 박재규·마유미·홍정화, 「2008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과제의 정책환류 내용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 여성부,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2010.

- 여성가족부, 「201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2011.
- 여성가족부,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011.
- 이순태 외,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조선주·우석진·이선행,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조선주 외,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조선주 외, 「2011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20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한 눈에 보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
- Budlender, Debbie., Rhonda Sharp and Kerri Allen(1998), 「How to Do a
Gender Sensitive Budget Analysis: Contemporary Research and Practice」,
Commonwealth Secretariat.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Assessments for the Laws
of the Gender Equalization**

Kwon, Soon-Hyun

(Visiting Researche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im, Young-Sook

(Research Fellow,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s and accomplishments of the two representative laws for gender equalization, which ar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System.

The purpose of Gender Budgeting System is to unify the realistic demands of women and men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so that women and men receive even benefits from public expenditure. Through the assessments of the governmental budget impact, it promotes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and clarity of the governmental finance by making the policy gender sensitive. The Gender Budge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Finance Act in 2006 and the first gender budget statement had been produced in 2010.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to give women and men even benefits in considering the demand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when planning, executing, and assessing the policy. This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through the review of the objective materials and policy such as gender statistics and the demand of the customers and to grasp how the operation or the abolition of the policy affects women and men differentl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based upon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hich was enacted in 2002. Later, Gender Impact Assessment Act has been enacted in 2011.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two legal systems have not yet shown visible accomplishments in narrowing gender gap in Korea. However, there are some positive aspects in the two systems. Through the Gender Budgeting System, gender statistics data such as beneficiaries by gender, which are very important in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being produced. And in case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it is found that there have been more improvements of gender equality in social welfare area, which had been the main area tha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s had been performed for the last few years, rather than other areas such as family relations, economic activities, and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s might have brought some positive effects in the areas of policy application.

For the improvements of the two legal systems, there need to be revisions of the laws to make legal basis to strengthen the supports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to have the necessary education for proper assessments. And it is also argued the two legal systems to be linked in the future so that the laws for gender equalization work in a way that different legal systems support each other.